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송통신위원회

법제처 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2항 중 “행할 수 있다”를 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3조(수신료의 납부통지) ① (생 략)</p> <p>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<u>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3조(수신료의 납부통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<u>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	
연 락 처	(02) 2110 - 1409